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(집단·흉기등 폭행)·준강간·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(집단·흉기등 상해)·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특수강간)·감금·부착명령



[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. 5. 18. 2011고합244,2011전고63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】

【검 사】강선주(기소), 신원용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김문행(국선)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.

압수된 부엌칼 1개(증 제1호), 가위 1개(증 제2호), 일회용 면도기 1개(증 제3호)를 각 몰수한다.

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, 고지한다.

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.

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[이유]

]